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200864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20086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5134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장근석

주위적 피고, 항소인1.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예비적 피고, 항소심당사자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변론종결 2024. 7. 24.

판결선고 2024. 9. 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513483 판결

주 문

1.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326,121,254원 및 그중 308,487,527원에 대하여 2022.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4.1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6,121,254원 및 그중 308,487,527원에 대하여 2022.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4.1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의 “D”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대출상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8~9행의 “F”를 “G”으로 고친다.
- 9면 9~14행, 10면 7행의 “보증책임 또는”, 10면 13행부터 14면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 20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보증서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하여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될 수 없었음에도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 공사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손해는 이 사건 보증서가 잘못 발급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공사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손해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중, 판사 김관용, 판사 박선영